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8월 2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·방송·통신은 23일(일) 15시부터 보도 가능)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신성주 과장(044-203-5760), 정지선 사무관(5765)

한국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으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쉬워진다

- 제12차 한국-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,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-

※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

□ **'한국-아세안 자유무역협정**(이하 **FTA)'**가 우리 **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**시키는 방향으로 **한 단계 향상되 개정**된다.

○ **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과 **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**은 **8. 23.**(일) 오전,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**상품협정 개정의정서(Protocol)에 서명***했다.

* 한국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는 정식 서명, 여타 아세안 7개국은 잠정 서명

○ 한-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*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, 이번에 **서명한 개정의정서**는 **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**로 지난 '13.6월부터 **약 2년에 걸쳐** 아세안 국가들과 **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**이며,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.

* 한-칠레('04.4), 한-싱가포르('06.3), 한-EFTA('06.9)에 이어, '07.6월에 발효

□ **개정의정서가 발효하면,**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에 더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**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**되어, 한국-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한 **대(對)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**된다.

□ **'상품협정 개정의정서'**의 내용은 △**무역원활화 규정**의 도입, △**상호주의 제도의 개선**, △**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**로 요약한다.

① **(무역원활화) 통관 절차의 개선**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**새롭게 도입**하거나, **기존 제도를 보완**했다.

○ 우선, **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**토록 협정문에 **규정**함으로써, 그간 일부 국가의 증명서 거부로 인한 **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**이다. (상품협정 부속서3-부록1-제5조 제1항의 개정)

○ **'역내부가가치' 계산방식**(집적법/공제법)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**개별 기업별로 유리하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**했다. (상품협정 부속서3-제4조제2항 각주의 개정)

○ 또한, **'사전심사 제도'***를 한-아세안 FTA에도 **새롭게 도입**함으로써, 아세안과의 수출입 이전에 **FTA혜택 향유 가능성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**할 수 있게 됐다. (상품협정 제4조의2 신설)

* 수입국 관세당국에 '품목코드(HS코드)', '원산지 인정여부' 등 사전심사 요청 가능

○ **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도 의무화**함으로써, FTA**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**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. (상품협정 제4조의 개정, 제4조의3 신설)

② **(상호주의 제도*)** 그간 **다소 보호주의적**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를 **축소해 나가는 방향**으로 개선했다. (부속서2-제7항의2 신설)

*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

○ 우리나라와 아세안 **6개국**(브루나이·라오스·말레이시아·미얀마·싱·베)**과는 '적용을 중단'**, 여타 **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**로 했다.

③ **(관세인하일정)** 마지막으로, 모든 당사국별 **'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세율**을 **구체적으로 명시**하여, 협정에 첨부하였다. (부속서1/2의 통합부록)

○ **그간 일부 국가들이** 자국법령에서 **FTA세율을 모호하게 제공**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**연도별 관세율을 명확히 함**으로써 **이러한 불편을 전면 해소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 서명된 개정의정서는 FTA홈페이지(http://www.fta.go.kr)에 우선 제공(8.25)하며, **발효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용할 예정**이다.

○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'**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이 국내 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**'을 기준으로 결정*되며,

* (연내 통보시) '16. 1. 1. 발효 / ('16년 이후 통보시)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중 나중 통보국의 통보일 후 두 번째 달 1일 발효

○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모두 개정의정서가 **'16. 1. 1. 발효할 수 있도록** 각 국가별 필요한 **국내절차를 진행**할 예정이며, 동 **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** 당사국간 **긴밀히 협의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**관련법령 개정**으로 **국내절차가 완료**된다.

*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비준 동의 불요하며, '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' 등 개정 예정

□ 특히,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**'16. 1. 1.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 6개국**(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)의 **민감 품목군 세율이 크게 인하*되는 시점**으로 이번에 **새롭게 작성된 연도별 관세인하일정표에서 해당 세율을 확인**할 수 있다.

* 민감품목은 0~5%로, 초민감품목은 상품협정 부속서2 규정에 따라 인하

○ 참고로, **'연도별 관세인하일정'**은 '07년 상품협정 발효당시 약속을 반영한 것으로, **개정의정서 발효시점과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**하다.

□ 한편, 그간 제도 개선협상과 더불어 이루어진, **FTA 상품양허 개선 관련 추가자유화 논의**도 금번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화 수준과 방식에 대한 **기본 공감대가 형성**되는 등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,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할 예정이다.

※ 붙임: 1.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개요, 2.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주요내용, 3. 한-아세안 FTA 개요, 4. 한-아세안 FTA 협정 구성 및 양허수준, 5. 한-아세안 교역·투자 현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신성주 과장(☎ 044-203-57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개요

1. 경과

○ '13.6월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

○ '15.5월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*

* 7.7(화) 개정의정서 문안의 법률검토 및 양허표 협의 완료

○ '15.8월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(8.23)시 개정의정서 서명

2. 주요 개정 내용

○ 관세 법령 공표,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, 역내부가가치기준 계산 방식 기업별 선택, 사전심사 발급 등 **무역원활화 규정 도입**

○ 한국과 아세안 6개국(브루나이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싱가포르, 베트남)간 **상호주의 제도* 적용 중단**, 여타 4개국간 적용 **확대 금지**

*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

○ 각 당사국의 2016.1.1 이후 **연도별 관세인하일정 첨부**

3. 기대효과

○ 통관·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이 개선되고, 향후 관세인하일정이 명확해져 우리 **기업의 협정 활용**이 **촉진**될 것으로 기대

4. 국내절차 추진 일정안

절차	차관회의	국무회의	대통령재가	서명	국내법령 개정	발효목표
기간	8.13	8.17	8.19	8.23	9~12월	16.1.1

참고 2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주요내용

구분	현행	개정내용
1.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		
1)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명문화	협정상 규정 부재	협정상 규정 도입
	☞ 지금까지 이행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인정하여 왔으나, 협정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 제거	
2) 기업별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 선택 허용	국별 일률적 적용 (우리나라: 공제법)	기업별로 공제법 또는 집적법 중 선택 적용
	☞ 기업별로 유리한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특혜 관세 활용이 용이	
3) 사전심사 조항 도입	협정상 규정 부재	수입자/수출자/생산자가 ①품목코드, ② 관세평가 관련 문의, ③ 원산지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수입前 사전적으로 심사 요청 가능 (가능한 범위내)
	☞ 기업에서 FTA 혜택 향유 가능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서 실제 수출입시 수입국의 특혜관세 거부 또는 추후 관세추징의 우려 해소	
4) 투명성 규정 보완	GATT 제10조 준용	- 통관 관련 법령/정보를 대중에 공개 - 통관 관련 문의처 신설
	☞ 기존 기본적인 투명성 조항에 더하여, 보다 구체화된 통관 관련 정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 가능	
2. 상호주의 제도 개선	한국과 아세안 5개국(인니, 태국, 필리핀, 캄보디아, 베트남)이 운영중	- 한국과 아세안 4개국(인니, 태국, 필리핀, 캄보디아)간 상호주의 제도를 유지하되, 적용 품목 확대 금지 - 한국과 여타 6개국은 상호주의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
	☞ 현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주의 제도를 일부 폐지 및 확대 금지함으로써 한-아세안간 교역 촉진 기대	
3. 양허표 (관세인하일정) 첨부	협정상 품목 목록만 존재	연도별·품목별 세율 명시
	☞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아세안측 세율을 파악할 수 있고,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세율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각국이 적용할 세율을 명확화	

참고3 한-아세안 FTA 개요

□ '04.11월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선언

□ 2006.8.24 상품협정 서명

※ 태국은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하였으나, 2007.12월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, 2010.1.1 한-태국간 상품협정 발효

□ '07년 상품협정, '09년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순차적 발효

-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품목(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모두 90%) 및 민감품목(10%)으로 나누어 일반품목은 '12년*까지 관세철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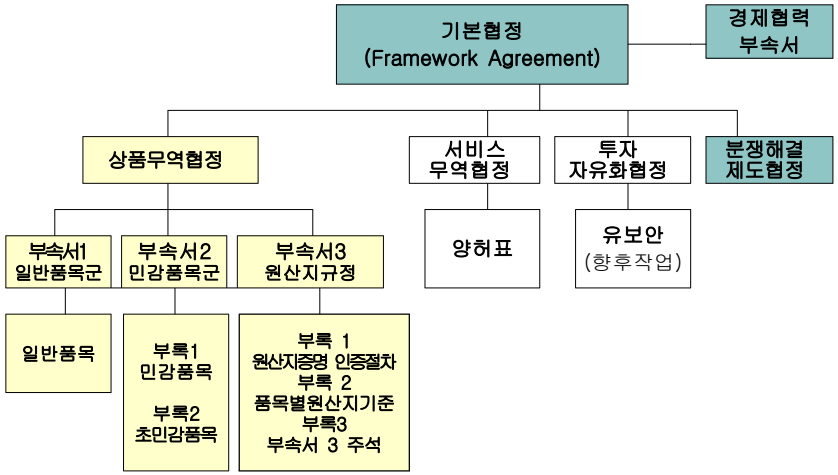
* 다만, 베트남('18년)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('20년)의 경우 예외 인정

□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 이행위원회 및 4차례 임시위원회 개최

○ 제1차 이행위원회(2009.10.12-14, 서울)
○ 제2차 이행위원회(2010.3.10-12, 필리핀)
○ 제3차 이행위원회(2010.7.28-30, 캄보디아)
○ 임시이행위원회(2010.12.9-10, 아세안 사무국)
○ 제4차 이행위원회(2011.3.9-11, 서울)
○ 제5차 이행위원회(2011.6.13-16, 베트남)
○ 이행위원회 특별회의(2011.12.20-21, 인도네시아)
○ 제6차 이행위원회(2012.2.28.-3.1, 라오스)
○ 제7차 이행위원회(2012.7.10.-11, 아세안 사무국)
○ 제8차 이행위원회(2013.6.25-27, 서울)
○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(2013.9.16-17, 서울)
○ 제9차 이행위원회(2014.4.26-28, 인도네시아)
○ 제10차 이행위원회(2014.7.14-16, 서울)
○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(2014.11.17-18, 아세안 사무국)
○ 제11차 이행위원회(2015.1.27-29, 태국)
○ 제12차 이행위원회(2015.5.12-14, 서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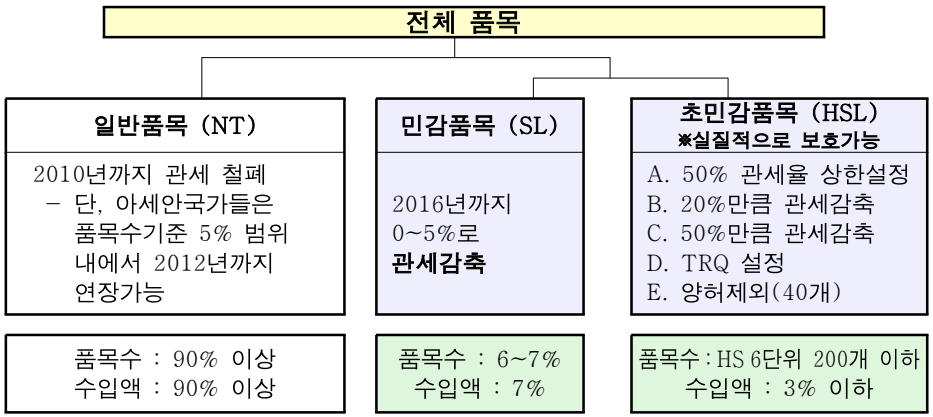
참고4 한-아세안 FTA 협정 구성 및 양허수준

가. 한-ASEAN FTA 협정 구성



나. 상품협정 양허안

□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군(NT), 민감품목군(SL), 초민감품목(HSL)로 나누는 아래 Modality 합의



※ 후발개도국 4개국(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)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·감축 허용

<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>

국가	발효	2007	2008	2009	2010	2012	2017
한국	70% 이상 관세철폐		95% 관세철폐		관세철폐 완료		
아세안6		최소 50% 품목에 대해 관세 0~5%로 감축		최소 90% 관세 철폐	최소 95% 관세철폐	일반 품목군 관세철폐 완료 (태국제외)	제2 일반품목군 관세철폐 완료 (태국)

국가	2013	2015	2016	2017	2018	2020
베트남	최소 50% 품목에 대해 관세 0-5%로 감축	최소 90% 관세 철폐	최소 95% 관세철폐		관세철폐 완료	
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		최소 50% 품목에 대한 관세를 0-5%로 감축		최소 90% 관세철폐	최소 95% 관세철폐	관세 철폐 완료

<민감품목군(SL + HSL)에 대한 관세 감축 상한선>

국가	민감품목군 상한선	초민감품목군 상한선
한국 아세안6	모든 관세품목의 10%, 그리고 총수입액의 10%	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%, 그리고 총수입액 3%
베트남	모든 관세품목의 10%, 그리고 총수입액의 25%	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%
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	모든 관세품목의 10%	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%

<일반민감품목(SL)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>

국가	20%로 인하	0~5%로 인하
한국, 아세안6	2012. 1. 1	2016. 1. 1
베트남	2017. 1. 1	2021. 1. 1
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	2020. 1. 1	2024. 1. 1

참고 5 한-아세안 교역 · 투자 현황

※상품무역협정 2007년 6월 발효

※서비스협정 2009년 5월 발효
※투자협정 2009년 9월 발효

□ 교역 현황

< 한 · ASEAN 연도별 무역 현황(백만불, 전년 동기 대비 %) >

구 분	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15년 상반기
수 출	금액	32,066	38,749	49,283	40,979	53,195	71,801	79,145	81,997	84,577	38,144
	증가율	16.9	20.8	27.2	△16.8	29.8	35.0	10.2	3.6	3.1	△13.9
수 입	금액	29,743	33,110	40,917	34,053	44,099	53,121	51,977	53,339	53,418	22,327
	증가율	14.1	11.3	23.6	△16.8	29.5	20.5	△2.2	2.6	0.1	△16.6
무역규모		61,809	71,859	90,200	75,032	97,294	124,922	131,122	135,336	137,995	60,471
증가율		15.5	16.3	25.5	△16.8	29.7	28.4	5.0	3.2	2.0	△14.9
무역수지		2,323	5,639	8,366	6,926	9,096	18,680	27,168	28,658	31,160	15,818

< 15년 상반기 한 · ASEAN 품목별 교역현황(백만불, 전년동기대비 %), MTI 4단위 >

순위	수 출			수 입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1	집적회로반도체 (8311)	5,177	△5.6	집적회로반도체 (8311)	2,436	△36.5
2	경유 (1332)	3,221	△54.7	천연가스 (1340)	2,354	△41.5
3	무선통신기기부품 (8128)	2,218	136.4	중유 (1335)	968	△50.8
4	선박 (7461)	1,358	△67.7	유연탄 (1322)	882	△29.2
5	휘발유 (1331)	1,288	△56.2	직물제의류 (4412)	846	△0.7
6	합성수지 (2140)	1,218	△11.5	원유 (1310)	634	△49.1
7	편직물 (4360)	961	△0.9	무선통신기기부품 (8128)	492	74.8
8	열연강판 (6132)	719	△7.1	편직제의류 (4411)	486	17.1
9	인쇄회로 (8343)	618	30.4	반도체제조용장비 (7321)	356	59.1
10	철구조물 (6152)	498	264.3	개별소자반도체 (8313)	338	25.8
	총계	17,276		총계	9,792	

□ 투자 현황

< 한국의 對ASEAN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건, 백만불, 전년대비%)

구 분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15년 상반기
건 수	994	1,479	2,307	2,535	1,779	1,981	2,115	2,101	2,455	2,524	1,283
증가율	25.2	48.8	56.0	9.9	△29.8	11.4	6.8	△0.7	16.8	2.8	2.5
금 액	970	3,633	6,531	10,502	6,286	7,102	6,326	4,506	4,572	4,990	3,878
증가율	28.0	274.5	79.8	60.8	△40.1	13.0	△10.9	△28.8	1.5	9.1	48.5

< ASEAN의 對韓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건,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%)

구 분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15년 상반기
건 수	177	163	159	197	196	222	222	180	186	223	92
증가율	22.1	△7.9	△2.5	23.9	△0.5	13.3	0	△18.9	3.3	19.9	0.0
금 액	641	703	595	985	576	1,636	742	1,681	618	1,785	802
증가율	2.6	9.5	△15.3	65.6	△41.6	184.1	△54.6	126.7	△63.2	189.2	△27.4